

라. 사실상 소유권 취득일과 등기일과의 괴리발생에 따른 민원소지

현재 재산세는 6.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으나, 일할계산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별도로 정해야 가능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시점에 따라 사실상 소유기간의 괴리가 발생되는 법리적 문제발생 등 또 다른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마. 예산성립과의 괴리문제 발생소지

건축물의 신축·말소 등과 소유자의 변동으로 연중 일할계산하는 재산세 체계로는 매월 소요되는 예산순기와 맞추어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연세주의(年稅主義)로 과세하는 것과 일할계산하는 방법과의 실익은 오히려 연세주의가 좋다고 보아진다.

바. 빈번한 보유세제개편에 따른 세무행정 불신 초래

2004년 말 보유세제개편시 과세기준일과 납기 등 기존의 보유세제를 전면개편한데 이어 2005년 말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에서의 부동산 세제개편 등 수차례 실천 세제 개편으로 다소 혼돈스러운 시점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조세행정의 불신만 초래될 소지가 있다.

IV. 맺음말

재산세 일할계산제도 도입의견은 종전의 종합토지세 운영 당시인 2001년도에 민원건의 등 일부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 합산누진과세 체계 등 재산세(종합토지세)의 성격상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과세기준일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다수의 견에 따라 별다른 이견 없이 현행 제도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유세제의 강화로 매년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각에서 일할계산제도 도입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해를 돋는 차원에서 재산세에 일할계산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과 도입이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그 개략에 대하여 살